

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

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의 2024년도 공고 규모와 추진일정 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「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3일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1 공고 개요

□ 공고규모 : 2024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355억 원 이내

사업명	사업공고	선정 평가	지원 예산 (백만 원)		
			합계	지정 공모	자유 응모
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	'24.1.15.주간	3월중	12,164	7,472	4,692
기술사업화지원			9,521	-	9,521
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 신규			4,830	4,290	540
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 신규			1,500	1,500	-
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 신규			4,500	-	4,500
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	'24.1.22.주간		3,010	3,010	-
총 6개 사업			35,525	16,272	19,253

2

신청 자격 및 제한

□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

-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 - 국·공립연구기관
 -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
 - 「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
 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- 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
 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
 -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(기업) 및 단체 또는 연구소*
- *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

□ 연구책임자 신청자격

- 주관·공동·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·공동·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
 - ※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, 임기만료,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
 - ※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,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)
- 단,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

□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

-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,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
 - ※ 관련 규정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5조(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)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
 - ※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음
-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
 - ※ 관련규정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4조(제재처분의 사후관리)
- 연구개발기관(영리기관)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 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
 -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
 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- ※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 -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-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까지 다음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
 - 연차보고서, 단계보고서, 최종보고서 제출 불이행
 - 기술료 납부 불이행
 - 정산금 또는 환수금, 제재부가금 납부 불이행

□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

-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 (인건비·학생인건비·미지급인건비 등)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
- 단,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,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(학생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제외)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연평균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 (☞ 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)

※ 관련 규정 :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

□ 과제구성 제한

-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

□ 연구개발사업별 신청자격

- 사업 특성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연구개발 사업별 공고문 반드시 참조

3 신청방법 및 절차

□ 신청 방법

◆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을 통해 접수

-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<http://www.iris.go.kr>)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(우편, 인편접수 불가)

【신청 절차】

▲IRIS 접속 → ▲로그인 → ▲사업공고 → ▲상세검색 → ▲정부부처(농림축산식품부) 또는 전문기관(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) 선택 후 '검색' 클릭 → ▲사업 세부공고 목록 확인 후 지원희망 과제 선택 → ▲신청내용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→ ▲최종 확인 후 접수 완료

- 접수 기간 내 IRIS에서 회원가입과 함께 연구자 전환, 연구기관 정보 등록 및 총괄담당자 지정 필수

□ 유의사항

- 신청마감일 16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
 - 신청마감일 16시에 시스템 접속이 강제 종료됨에 따라, 종료 전까지 접수정보 입력 뿐 아니라 '최종확인' 및 '제출' 버튼을 반드시 클릭
- ※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~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 (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)
- ※ 기한 내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실패시 신청서류 접수 불인정

□ 제출 서류 <서식 준수>

- 연구개발계획서 : 붙임 서식(별첨된 서류 포함)
 - ※ 연구계획서 본문(연구개발 필요성, 목표 및 내용, 추진전략·방법 및 추진체계,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)을 50페이지 이내로 작성
-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
 -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

< 주의 사항 >

- ◆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날인 해야 함.
- ◆ 제출서류 누락,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
- ◆ 평가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평가 전에 평가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
□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

- ◆ 각 사업별 지원규모와 일정 등은 사업별 특성,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, 향후 공고되는 각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청년인력 의무채용 준수

① < 청년의무채용 >

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중 연구 수행기간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필수적으로 신규 채용

- ▶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기업 간 협의 하여 채용하고, 채용 후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12개월 이상 과제참여 필수
- ▶ 협약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계상(참여율 100%) 하여야 하며, 고용 조건 미이행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 현물 계상액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 조치함

② < 참여기업 현금부담 완화 >

중소·중견기업이 청년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(만 18세 이상 34세 이하)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(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고용 포함)할 경우,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중을 축소하고 현물로 대체 가능

- ▶ (예시) 2명 청년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을 채용할 경우, 추가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축소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

○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구수행기간 구성

- 연구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협약시점(해당 월)부터 당해연도 12월 말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연구비를 배정
- 2차년도 이후는 매년 1월 1일 시작, 12월 31일 종료를 원칙
- ※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차별 연구기간을 감안해 연구내용 및 연구비를 조정하여 작성 하고, 2024년도 1년차 연구기간은 9개월로 산정 (연구시작일 4월 1일)

○ 기술료 및 매출액, 고용창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

- 개발된 기술의 실시(기술이전)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기술료, 매출액, 고용창출, 직·간접적 비용 절감, 전문인력 양성 등을 연구 성과목표로 제시

○ 연구개발비의 지원·부담 기준 준수

구 분	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(나머지는 기관 부담)	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
대기업, 공기업	연구개발비의 50% 이하	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% 이상
중견기업	연구개발비의 70% 이하	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% 이상
중소기업	연구개발비의 75% 이하	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% 이상

※ 연구개발비 = 정부지원연구개발비 + 기관부담 연구개발비(현물+현금)

○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

- 지정공모과제는 모두 일반과제로 신청
- 자유응모과제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

○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

-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·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신청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
-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시설·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·장비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

※ 심의기준, 심의항목 등은 「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」 참조

4 세부사업별 공고

□ 연구개발사업별 공고문 게재

- 통합공고문의 공고 개요에 따른 사업별 공고 추진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 확인 가능

공고일	사업명	홈페이지
'24.1.15. 주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•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 •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 •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 • 기술사업화지원사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농림축산식품부(www.mafra.go.kr) ▶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(www.ipet.re.kr) ▶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(http://www.iris.go.kr)
'24.1.22. 주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농림축산식품부(www.mafra.go.kr) ▶ 과학기술정보통신부(www.msit.go.kr) ▶ 농촌진흥청(www.rda.go.kr) ▶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(www.ipet.re.kr) ▶ 한국연구재단(www.nrf.re.kr) ▶ (재)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(kosfarm.re.kr) ▶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(http://www.iris.go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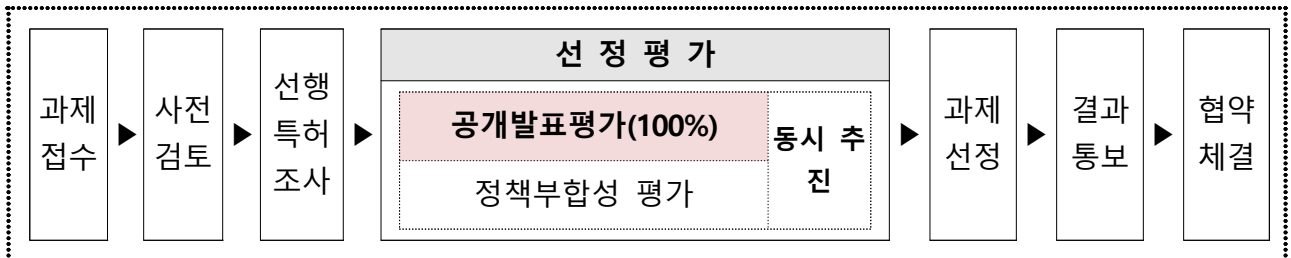
5

선정기준 및 절차

□ 선정 기준

- 「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」 제13조(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), 「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」 제2절(연구개발과제의 평가·선정)
- 선정평가 결과,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,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순위 연구개발기관(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제외)을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정할 수 있음

□ 선정 절차



- 1) 예산 상황,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
- 2) 정책부합성 평가는 「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」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개발표평가 이전 혹은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음

▶ 접수된 과제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과제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개발표평가 전에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

* 이 경우 서면평가 결과 5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과제만 공개발표평가 대상으로 하며 서면평가 점수 40%, 공개발표평가 점수 60%를 반영하여 선정함

▶ 사업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 및 절차, 평가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연구개발 사업별 공고문 반드시 참조

□ 단계 협약

총 연구기간		1단계	2단계	3단계
5년 이내	2년 9개월	1년 9개월	1년	-
	3년 9개월	1년 9개월	2년	-
	4년 9개월	1년 9개월	3년	-
5년 초과	5년 9개월	1년 9개월	2년	2년
	6년 9개월	1년 9개월	3년	2년

※ 관련 규정 : 「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」 제17조(협약의 체결)

※ 각 단계 종료 시점에서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단계의 지원 여부를 결정

□ 주요 평가지표

구분	주요 평가 내용	관련 규정
지정공모 과제	연구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정도, 기술개발 수행 능력, 기술 개발 추진 전략,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, 사업의 특성	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 사업 관리기준 별지 제 8호, 제9호
	<정책부합성 평가> 지정한 사업내용의 충실성, 농업 현장정책과의 연계성,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	별지 제7호
자유응모 과제	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, 연구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, 산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	별지 제10호, 제11호
	<정책부합성 평가> 연구내용의 충실성, 농축산 현장 정책과의 연계성,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	별지 제7호

□ 선정 시 우대사항 (접수 마감일 기준)

- 「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」 별표 1(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·감점 부여 및 적용 기준)에 의한 가·감점 기준 적용
 - ※ 사업별 특성에 따라 가점 적용 항목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별 공고문 참조
-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하고, 공고 양식 중 '가점적용 신청서'를 제출한 과제만 적용 (미제출 시 무조건 미적용)
 - 가점적용을 신청할 경우 요건에 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
 - 가점적용은 가점대상자가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'응모과제'에만 적용하며, 적용 기간 중 선정 유무와 상관없이 1회, 1과제에 한함
 - ※ 2개 이상의 과제에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, 가점대상자가 적용 대상 과제에 대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신청(접수) 번호가 빠른 과제에 임의로 적용함

6

문의처 및 기타

관련 규정

- 「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」 및 동법 시행령·시행규칙, 「국가연구개발 혁신법」, 「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」, 「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」 등

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됨

- ①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
- ② 필수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
-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 참여에 부적정한 경우
- ④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- ⑤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
- ⑥ 제안한 연구개발계획서에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
- ⑦ 공고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

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연구개발사업 참여 공무원의 겸직허가 신고 안내

- 연구개발사업 참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 필요

문의처

-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융복합사업실(061-338-9756)

사업명	문의처	연락처
■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	농생명사업실	061-338-9771
■ 기술사업화지원	농생명사업실	061-338-9766
■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	융복합사업실	061-338-9756
■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	융복합사업실	061-338-9753
■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	농생명사업실	061-338-9765

- (재)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 사업관리실

사업명	문의처	연락처
■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	과제관리팀	044-559-5622